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4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일부 시세의 감면후 소급 추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조세감면대상자간 조세감면의 형평성 제고 및 일부 불명확한 자구의 정리로 규정취지의 명확성을 기하여,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등 조례를 부분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세의 사후 추징 근거를 삭제하여 불합리점을 해소함 (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단서삭제).
- 나. 종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의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정함 (안 제7조).
- 다. 지정문화재의 감면 규정을 다른 조항과 일치되게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기함 (안 제10조제2항).
- 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함 (안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 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 입법예고기간 : 2002. 1. 3. ~ 2002. 1. 13.

기타 참고사항

-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달(경기도)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본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산세와”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다음에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삽입한다.

제18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로 하고, “동법 제24조 및 제26조”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영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김향용
	담당자 성명·전화	양태호 (행정 218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나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 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② <u>노인복지시설</u>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u>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제11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현 행	개 정 안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 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삽 입>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u>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u>동법 제24조 및 제2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u>철도법 제7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u>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u>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u>동법 제2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u> <u>동법 제30조 및 제32조</u> ②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u> <u>동법 제32조</u>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u>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9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u></p> <p>----- ----- -----</p> <p>1. ~ 2. (현행과 같음)</p>